

電子貿易文書保管所 運營上의 問題點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Operational Problems of e-Trade Document Repository

안병수(Byung-Soo Ahn)

서울디지털대학교 무역학부 부교수

임성철(Sung-Chul Lim)

서울디지털대학교 겸임교수

목 차

I. 서 론

II. 전자무역문서보관소의 출현

III. 전자문서보관소의 특성 분석

IV. 전자무역문서보관소 운영상의 주요 과제

V.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Abstract

It is no unnecessary to tell the importance of foreign trade in Korea economics. Nevertheless, government's direct support is impossible owing to WTO's regulation. Accordingly, government have brought focus into trade facilitation as paperless trade.

e-Trade document repository building by government's budget and private sector's cooperation is a part of e-Trade platform and necessary function in connection with relay and certification of e-Trade document.

This study examined the estimated operational problems of e-Trade document repository as compared Licensed Electronic Document Repository.

Firstly, the operator of e-Trade document repository undertake multiple role and function as Licensed Certification Authorities(e-sign Act), Licensed Electronic Document Repository(Framework Act on Electronic Transaction) etc.

Secondly, sufficient levy that meet operating cost of the e-trade document is the key point of e-Trade document repository's success, because additional budget invest in that operation is too hard to do.

Thirdly, the operator of the e-Trade document repository have to keep fairness, objectivity and transparency because the operational right is exclusive.

Key Words : e-Trade document repository, e-Trade platform, e-Trade

* 본 논문은 2005년 12월 2일에 개최된 한국통상정보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초고 형태로 발표된 바 있으며 유익한 토론을 통하여 도움을 주신 강현구(Kiec 한국전자거래진흥원), 민철홍(Kmet, 한국무역정보통신), 이재홍(동국대)님께 감사사를 표한다.

I. 序 論

정부는 지난 2003년 12월 제1차 국가전자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자무역촉진3개년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서 2004년 상반기에 무역업무프로세스혁신 BPR/ISP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후 전자무역기반시설의 1차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2005년 9월에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시범운영사업으로서 수출신용장의 전자적 유통을 실현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최근 2-3년간 우리나라 무역계는 전자무역 인프라의 구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핵심에는 이른바 “전자무역기반시설(e-Trade Platform)”이 자리잡고 있다. 전자무역기반시설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전자무역문서의 중계·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시스템¹⁾을 말하며, 무역업자는 이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마케팅, 상역, 물류, 통관, 결제 등 무역의 전체 과정과 관련된 유관기관 및 해외와의 연계를 단일창구로 접촉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자무역기반시설은 2005년 12월에 전면개정된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향후 전자무역의 핵심적인 기반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런데 이 전자무역기반시설은 문서중계시스템, 전자무역문서보관소, 표준등록저장소의 핵심적인 기능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역업자와 유관기관 사이에 송수신되고 유통되는 모든 전자무역문서는 이 전자무역문서보관소에 최소 3년 이상 보관되도록 규정²⁾되어 있다.

한편 2005년 3월에 개정된 전자거래기본법에는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를 보관 또는 증명하거나 그 밖의 전자문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³⁾으로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2005. 11)과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2005.11)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을 위한 자격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전자문서를 통하여 무역거래 혹은 국내 상거래를 하는 당사자들에게 공인전자문서보관소 혹은 전자무역문서보관소가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고 향후의 실무관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서비스 제공기관인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및 전자무역문서보관소의 운영에 대한 검토와 논의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형편이다.

이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와 전자무역문서보관소의 개념이 최근에 개정된 법률상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과, 이해 당사자들에게 아직까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실제 전자문서보관소라는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과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된 후에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이에 대한 대응과 수정에는 커다란 사회적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판단된다.

1)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2005. 12 개정) 제2조 5호
2)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2005. 12 개정) 제20조 제5항
3) 전자거래기본법(2005. 3 개정) 제2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들을 통하여 전자문서보관소 특히 무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전자무역문서보관소의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해봄으로써 국가적인 노력이 경주된 전자무역문서보관소의 조기 정착 및 사용확산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바람직한 무역관습을 정착시키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상기 연구목적상 전자무역문서보관소의 운영에 대하여 검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자문서와 전자문서보관소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분석도 요구되리라 판단된다. 또 무역거래를 둘러싼 법이나 제도 역시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논의는 가급적 지양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한 발전추세에 있어 연구대상을 삼기가 쉽지 않고 설혹 연구대상을 정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소양을 지니지 못한 연구자로서는 적절한 연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된 연구범위가 될 수 밖에 없는 법제도 역시 연구자의 천학비재로 말미암아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없는 실정이지만 연구대상과 깊이 관련된 법규에 한하여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범위 내에서 연구되는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전자무역문서보관소의 출현에 대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문서보관소의 개념을 정리하고 전자무역문서보관소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전자무역문서보관소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전자문서보관소와의 비교를 시도한다. 주요 비교요소는 근거법규, 운영주체, 사용자 및 보관대상문서, 지정 및 운영 형태 등이 된다. 아울러 이렇게 도출된 특성들을 토대로 하여 제4장에서는 전자무역문서보관소 운영상의 문제점 들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논자 나름의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을 연구하기 위해 본 논문은 문헌중심의 이론적 접근방법을 채택한다. 즉, 연구의 범위로 한정된 내용에 대하여 무역관습적인 혹은 법률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문서보관소와 관련된 각종 법규를 분석도구로 삼아, 국내외의 논문과 저서 그리고 인터넷 등에서 검색할 수 있는 국내외 기관의 보고서나 통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문헌중심의 연구방법을 택하고자 한다.

II. 電子貿易文書保管所의 出現

1. 電子文書의 概念과 電子文書保管所의 必要性

1) 電子文書의 概念

문서란 문자 또는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부호나 기호 등에 의하여 사상 또는 개념을 표시한 것으

로 정의할 수 있으며 주로 종이를 기록매체로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대나무, 점토판, 양피, 파피루스(papyrus) 등을 기록매체로 사용한 바 있으며 그중 파피루스는 기원전 1천년 경까지 약 4천년간 사용되어져 “종이(paper)”라는 말의 어원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인하여 종이문서가 지니는 기능을 전자적으로 대체하는 이른바 전자문서가 출현하게 되었고 기존의 법과 관습에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어 이를 수용하기 위한 노력들이 경주되고 있다.

전자문서는 전자거래기본법⁴⁾에 따르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라고 정의되며, UN/CEFACT⁵⁾는 “실제 비즈니스 거래와 관련된 식별자나 정보를 구조화되고 기능화된 방법으로 구성된 비즈니스 정보개체들의 집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문서는 EDI문서, XML/EDI문서, XML문서로 그 유형을 나눌 수 있으며, 기업들의 업무 처리에 컴퓨터 등 정보기기를 활용하면서 그 활용이 일반화되어 법률적으로 혹은 상관습적으로 수용하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문서는 정보적 기능, 증거적 기능, 상징적 기능을 갖는다.⁶⁾

정보적 기능(Informative Function)이란 문서에 일정한 의미내용을 포함하고 이를 표시하며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인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면 정보적 기능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증거적 기능(Evidential Function)이란 한 번 표시된 내용을 수정 보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것인데 전자문서의 경우 디지털 정보의 가변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보안절차가 요구된다.

상징적 기능(Symbolic Function)이란 원본문서에 부여한 의미를 통하여 특정한 권리를 지닌다는 것이며 전자 문서의 경우 원본문서의 유일성이 확보되기 어려워 특별한 방법과 형식 및 절차가 요구된다.

전자문서는 문서가 갖는 위의 세 가지 기능을 모두 발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색·보존·대조·복제 등에 있어서 뛰어난 편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활용이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2) 電子文書保管所의 必要性

앞서 살펴본 전자문서도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종전의 종이문서와 마찬가지로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보관하거나 관리해야 할 양이 폭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전자문서의 취급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⁷⁾ 따라서 전자문서를 훼손하지 않고 안전하

4) 전자거래기본법(2005. 3 개정) 제2조 1호

5)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알기쉬운 전자문서 가이드, p. 3.

6) Ian Walden and Nigel Savage, “The Legal Problems of Paperless Transactions”, The Journal of Business Law, 1989 March, p 103

7) 김선광, 전자문서 이용확산을 위한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의 도입 필요성과 입법내용, 통상정보연구 제6권 제1호, 2004, p. 196.

게 보관하거나 송수신을 대행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존재로서 전자문서보관소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전자문서의 송수신을 중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대상 전자문서의 보관이 이루어져야 하며 추후에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도 전자문서의 보관이 필요하다. 실제 공인전자문서보관소라는 개념이 법규화되기 전에 제정된 관세법,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등에서도 전자문서의 중계와 관련하여 문서보관과 관련된 규정⁸⁾을 두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서 전문성을 공인받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2. 電子貿易文書의 概念과 電子貿易文書保管所의 必要性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자문서는 기능상에서는 종이문서와 다름이 없되 그 물리적 형태가 전자적이라는 점에서 다르며, 종이문서가 가지는 불편함과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의도로 탄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법률⁹⁾에서는 “전자무역문서”라는 용어가 나타나고 있어 그 개념을 명확히 살펴보고자 한다.

1) 電子貿易文書의 概念

전자무역업무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전자무역문서는 “전자무역에 사용되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그런데 동 법률에서는 전자무역이란 “무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자무역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결국 전자무역문서는 본질적으로 앞서 살펴본 전자문서이되 다만 그 용도가 무역거래의 처리라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자무역문서의 개념은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우며 법규의 다른 조항들을 참조한다면 다음과 같이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수출신용장,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요건확인서, 원산지증명서, 수입화물선취보증서, 적하보험증권, 화물인도지시서 등의 특정 전자무역문서와 관련된 특정행위¹⁰⁾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도록 하고 있다.¹¹⁾ 즉, 무역에서 사용되는 모든 전자문서 중에서 재할용성이 높고 반복제출이 요구되는 문서에 한하여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종전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과 비교할 때 문서의 종류나 업무범위에 있어 대폭적으로 감소된 것으로 전자

8) 관세법 시행령 제 285조의 2 제 4항,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 제4항

9)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10) 수출신용장의 경우 통지업무,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경우 발급업무 등 당해 전자문서를 최초로 생성하거나 발급하는 행위이다.

11)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무역문서의 연속적이고 신속한 제3자 유통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무역업무의 절차 간소화 및 비용절감을 의도한 필요최소한의 제약으로 해석된다.

둘째, 전자무역문서는 산업자원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을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이를 준수한 것이어야 한다.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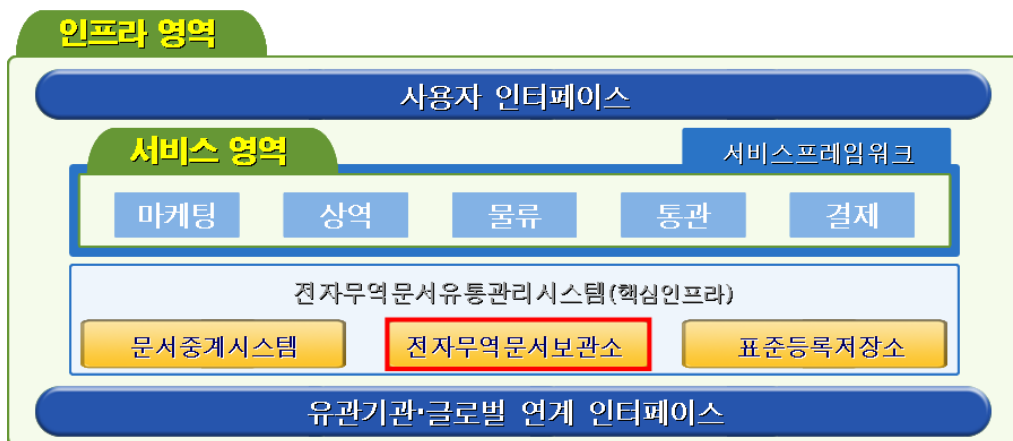
셋째, 산업자원부 장관은 무역관련법령등에서 정한 신청 등에 필요한 첨부서류 중 일부가 종이로 된 경우에는 이를 전자사본¹³⁾으로 작성해서 이에 전자서명법에 의한 신청인의 공인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¹⁴⁾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전자무역문서로 볼 수 있다.

2) 電子貿易文書保管所의 必要性

전자무역문서보관소란 전자무역기반시설 내의 한 구성요소로서, 전자무역 업무와 관련하여 유통되는 전자문서의 보관을 대행하며, 전자문서에 대한 각종 증명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자문서의 교환을 통한 무역거래에서 전자문서의 진정성을 제공하고 전자문서의 유통성 확보를 위한 기반 역할을 수행한다.

즉, 전자무역문서보관소는 [그림 II-1]에서와 같이 별도로 독립된 정보시스템이 아니라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일부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그리고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주된 기능인 전자무역문서 송수신의 중계와 유통을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전자무역문서의 보관을 하는 역할로서 전자무역문서보관소가 필요한 것이다.

[그림 II-1] 전자무역문서보관소 개념도



자료 : 삼성SDS 컨소시엄, 무역업무프로세스 혁신 BPR/ISP, 2004

- 12)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12조 제2항
- 13) 스캐닝한 것을 말한다.
- 14)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그러므로 전자무역문서보관소의 존재 이유는 전자문서의 보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자무역문서의 중계 및 유통과 증명을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즉, 무역거래와 관련된 당사자 일방은 타방 당사자(들)에게 전자적인 방식으로 무역문서를 제출 또는 신고, 보고하게 되며 이때 벗어질 수 있는 미도착이나 내용상위, 송수신 시점의 확인 등의 목적을 위하여 당사자관계에 있지 않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필요로 하게 된다. 전자무역기반시설은 이러한 목적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으며 실제 일 당사자가 송신한 전자무역문서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타방 당사자(들)에게 수신된다. 이때 전자무역기반시설내부에서는 문서중계시스템이 주된 역할을 하게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송수신된 문서의 원본과 동일한 사본이 전자무역문서보관소에 보관되며 추후 이러한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정보도 함께 보관된다. 따라서 전자무역문서가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따로 보관을 요청하거나 의식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보관이 이루어지며 법률에서는 이러한 보관이 최소한 3년 동안 이루어지도록 함¹⁵⁾으로써 전자무역문서의 유통에 안정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일단 전자무역문서보관소에 보관된 문서는 정당한 권리를 지닌 당사자가 허용하는 경우 필요로 하는 제3자에게 제출되거나 조회될 수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제출이나 사실확인을 위한 조회 등의 업무가 간소화되고 빨라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상으로 볼 때 전자무역문서보관소의 주요역할¹⁶⁾은 동일한 전자문서의 반복제출시 자동제출, 프로세스 개선으로 인한 첨부전자문서 생략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원본 증명, 발급기관과 제출기관이 다른 제3자 제출 및 유통, 법이 규정한 보관기관 내 발생하는 분쟁발생시 원본확인 및 증명, 중계시스템과 연계하여 전자문서 송수신 및 재배달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므로 전자무역문서보관소의 필요성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중계상의 필요성이다. 전자무역문서를 안전하게 송수신하고 추후 이에 대한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필요한데 이를 수행하는 주체로서 전자무역문서보관소¹⁷⁾가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보관(재유통)상의 필요성이다. 중계된 전자문서를 재차 유통시킴으로써 시간과 노력을 절감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어딘가에 보관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더구나 그에 대한 보안 등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설비를 갖춘 곳으로서 전자무역문서보관소가 요구된다 하겠다.

셋째, 증명상의 필요성이다. 중계 및 유통된 전자문서와 관련된 사실의 증명을 위해서는 그러한 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관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에는 언제라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주체로서 전자무역문서보관소가 필요하다 하겠다.

15)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 제5항

16) 삼성SDS 컨소시엄, 무역업무프로세스혁신 BPR/ISP 결과보고서, 2004

17) 이는 당연히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운영하는 전자무역기반시설내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Ⅲ. 電子貿易文書保管所의 特性 分析

전자무역문서보관소의 운영에 대하여 검토하기 위해서는 그 특성의 도출과 분석이 필수적이라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 유사개념이라 할 수 있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와의 비교를 시도하고자 한다.

1. 根據法規의 特性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전자거래기본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으며 전자무역문서보관소는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2006년 3월 현재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동 법률의 부칙에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후 발효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 발효되는 2006년 6월까지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정식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에서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운영자인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전자무역문서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전자문서의 보관을 행한 것으로 보는 규정¹⁸⁾을 두고 있어 궁극적으로 전자무역문서의 보관에 대한 법적 효력은 전자거래기본법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표 III-1〉 전자무역문서보관소 관련 법률 비교

구 분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전자무역문서보관소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2005. 3. 31 개정)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2005. 12. 23 전면개정)
시행령(대통령령)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2005. 11. 4 개정)	2006. 3월 현재 미제정
시행규칙(산업자원부령)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2005. 11. 14 개정)	2006. 3월 현재 미제정

자료 : 관련법률을 참조하여 논자가 정리

2. 運營主體의 特性

전자거래기본법상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를 보관 또는 증명하거나 그 밖에 전자문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¹⁹⁾을 말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전자문서보관 등의 안전성

18)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19)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8호

및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문서보관 등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지정하여 전자문서보관 등을 하게 할 수 있다.²⁰⁾

이러한 법규정으로 볼 때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보관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를 의미하기도 하며 동시에 그러한 정보시스템 시설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반면에 전자무역문서보관소는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상의 전자무역기반시설에 포함되는데, 동법에 따르면 전자무역기반시설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전자무역문서의 증계·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자본금·인력·기술력 등 기준에 적합한 자를 전자무역기반업무를 수행할 자로 지정할 수 있고²¹⁾ 이렇게 지정된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전자무역문서보관소를 포함하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운영업무를 배타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²²⁾

따라서 전자무역문서보관소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전담하여 운영하는 전자무역기반시설내의 한 기능요소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경우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법률상 규정하고 있다.²³⁾

첫째,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²⁴⁾ 그러나 이러한 전문성은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연적인 조항으로 보여진다.

둘째, 법인이어야 한다.²⁵⁾ 이는 개인의 경우 법인에 비하여 업무수행에 있어 안정성과 영속성이 부족하다는 근거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다음과 같은 인력·기술 능력, 재정 능력 그리고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²⁶⁾ 먼저 인력 및 기술능력으로는 전자문서의 보관·증명 그 밖에 관련된 업무(이하 "전자문서보관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운영하는 자로서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추고 또한 자격별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인력 12인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재정능력으로는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이 8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설 및 장비로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송신·수신 및 보관설비,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일자시각 및 증적(증적)을 기록·관리하는 설비,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한 시설·장비 및 정보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설비, 전자문서의 증명서 발급을 위한 설비,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시스템 관리 및 복제·저장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20)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 2

21)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22)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내지 제3항

23)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 2,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3

24)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 2 제1항

25)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 2 제2항

26)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 3 제1항

한편 전자무역문서보관소의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전자무역기반시설의 배타적 운영권자인 전자무역 기반사업자가 운영주체이며 그 지정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자본금, 인력, 기술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²⁷⁾ 있으나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예를 감안한다면 대략 다음의 기준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인력이나 기술력에 있어서는 자격기준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와 유사하되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복수로 지정되는 반면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경우 유일하게 지정하게 되므로 12인의 약 2배인 25인 이상의 인력을 기준으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본다.

둘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경우 정부가 투자한 전자무역기반시설의 구축비용을 감안할 때 그와 대등한 금액인 300억원 이상이 적정 수준인 것으로 본다.

셋째, 시설 및 장비의 경우 종류에 있어서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와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며 구체적인 성능사양은 업무량의 크기 등을 감안하여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넷째, 기본 자격 요건으로서 전자무역기반시설이 우리나라 무역업계 전체의 공공 기반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운영주체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중립적인 지위의 법인이 적절한 것으로 본다.

3. 利用者層 및 保管對象文書의 特性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경우 이용자층에 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없이 전자문서 보관 등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지 않으며,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²⁸⁾하고 있다.

또한 보관대상 문서에 있어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다만, 관계 법령이 정하는 문서의 보관에 갈음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²⁹⁾을 갖추으로써 객관성과 증빙력을 지니도록 규정³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은 비록 법규상으로 그러한 조항이 없다 할지라도 전자문서의 보관이 의도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당연히 준수되어야만 할 조건이라고 판단된다.

전자무역문서보관소의 이용자층은 무역업자, 무역유관기관,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 등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은 모두 무역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무역기반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27)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28)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 9 제1항 내지 제2항

29) 요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문서가 작성 및 송신·수신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3.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수신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
다만, 앞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자문서의 송신 또는 수신만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전자문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30)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

전자무역문서보관소에 문서를 보관하게 되는 것이다. 즉, 전자무역문서보관소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무역업무를 처리 또는 연계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관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³¹⁾

한편 전자무역문서보관소에 보관대상이 되는 문서는 원칙적으로 무역거래에 사용되는 모든 전자문서이며,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게 되는 경우³²⁾에만 보관대상이 된다. 또한 이 경우 전자거래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전자문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³³⁾ 그러나 특정 당사자가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특정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표 III-2>에서와 같이 반드시 전자무역기반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³⁴⁾도 있으며 이는 무역절차에서 반복하여 유통되는 경우에 반복제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의도로 설명할 수 있다.

<표 III-2> 전자무역기반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전자무역문서 활용업무

구분	전자무역문서의 업무내용
중계대상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신용장 통지업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급업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내국신용장 개설업무
	「대외무역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상의 수출입요건확인기관의 요건확인서 발급업무. 다만,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대외무역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매확인서 발급업무
	「대외무역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 다만, 「대외무역법」 제25조의2 및 동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외한다.
	「상법」 제69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상적하보험증권 발급업무
연계를 위한 보관대상	「해운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동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내지사 설치신고를 한 자의 수하인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 발급업무
	「관세법」 제2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대외무역법」 제25조의2 및 동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와 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하는 문서

자료 :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을 참조하여 논자가 정리

4. 指定 및 運營形態의 特性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중 신청과 심사에 의해 복수로 지정이 가능하며 지정의 유효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고 있다.³⁵⁾ 이와 달리 전자무역문서보관소를 포함하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의 경우 그 운영주체인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단독으

31) 논자는 문서보관이 전자무역기반시설을 운영하는 기반사업자의 주된 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32)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할지의 여부는 당사자의 선택사항이다.

33)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34)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및 3항

35)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 2 내지 15조의 4

로 지정하게 되며 이 역시 지정의 유효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정된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업무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한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이하 “업무준칙”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³⁶⁾ 이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의 종류.

둘째, 업무의 수행방법 및 수행절차.

셋째, 전자문서보관등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이용요금.

넷째, 그 밖에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러한 업무준칙이 전자문서보관 등의 업무의 안전성 및 정확성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전자문서보관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준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한편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경우에도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전자무역문서의 중계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업무준칙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³⁷⁾

첫째, 업무의 종류.

둘째, 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셋째, 전자무역문서의 중계보관 및 증명 등의 역무의 이용조건 및 이용요금.

넷째,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자의 위탁을 받아 전자무역문서의 송수신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접속을 제공하는 경우 표준이 되는 협정의 내용.

다섯째,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또한 앞서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경우와 같이 업무준칙의 내용이 전자무역문서의 중계보관 및 증명 등 업무의 안전성과 정확성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업무준칙의 변경 등 시정을 명할 수 있다.³⁸⁾

IV. 電子貿易文書保管所 運營上의 主要 課題

전자무역문서보관소는 아직 본격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기 전이며 시범운영단계로 전자신용장의 유통이 시작된 상태이다. 따라서 실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는 예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36)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 8

37)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제8조

38)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시행착오의 수정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일조한다는 뜻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들을 토대로 하여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를 도출하고 논자 나름의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 役割의 重疊에 따른 問題

현재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 무역자동화지정사업자로 지정된³⁹⁾ 한국무역정보통신(주)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인 동시에 관세법에 의한 전자문서중계사업자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다.

아울러 현재까지의 사업영역 및 역량 등으로 미루어 향후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및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지정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2006년 하반기 이후에는 하나의 주체로서 4개 법률에 따른 지위와 역할을 담당하는 상황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되며 이 경우 특정 시설과 인력 및 행위가 어떤 지위와 자격과 역할에 의한 것인지 책임과 권한 등의 귀속이 명확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더구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배타적으로 전담하는 업무⁴⁰⁾와 개방경쟁조건의 업무⁴¹⁾를 함께 수행하며, 특정 업무의 경우⁴²⁾ 담당 직원이 공무원의제 적용을 받기도 하는 등 지위와 역할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업무활동의 목적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시하며, 회계처리를 업무부문별로 분리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費用充當 및 課金 問題

전자무역기반시설 및 전자무역문서보관소의 구축과 운영에는 개별기업이 부담하기 어려운 거액⁴³⁾의

-
- 39) 한국무역정보통신외에 주식회사 데이콤이 복수지정되어 있다.
- 40) 1.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운영업무 (이하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2. 전자무역기반시설과 외국의 전자무역망간의 연계업무
 3.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 관련 업무의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한 중계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
- 41) 4. 전자무역문서의 중계사업 (이하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5.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계를 활용한 사업
 6.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활용한 전자무역서비스 관련 사업
 7. 전자무역문서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사업
 8.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화물유통정보 등 무역관련정보(이하 "무역정보"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처리·보관하여 검색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집합체(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의 제작·보급과 이를 활용한 사업
 9. 무역업자 및 무역유관기관에 대한 전자무역문서 중계 등에 관련된 기술의 보급 및 보급한 기술에 대한 사후관리 사업
 10. 그 밖에 전자무역의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42)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제29조)
- 43) 현재 추진중인 e-Trade Korea 2007 계획에는 일부 민간부담분을 포함하여 386.5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며 과거 무역자동화지정사업자의 운영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운영자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그러나 무역업계 전체로 보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⁴⁴⁾되고 있다. 즉, 국가 전체적인 공익은 존재하되 민간부문에 의한 이윤추구를 위한 자발적 기업화 및 경영이 기대되기 어려운 부문이다.

따라서 국가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전자무역기반시설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고 그 운영 자체는 경영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민간기업에게 맡기는 정책이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에 반영되어 전자무역기반사업자제도가 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운영에는 연간 8.35억원이 소요된다는 보고⁴⁵⁾를 감안할 때 단시간 내에 이러한 금액을 충당할만한 이용요금을 부과하여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우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적자를 부담하면서 전자무역기반시설을 운영하여 적절한 추가 투자 내지는 업무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운영하기에 필요한 수준으로 이용율이 높아질 때까지 예산의 일부를 보조해주되 그 용도와 성과관리를 철저히 제한하는 것도 전자무역기반시설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리라 본다.

한편 전자무역문서보관소를 포함하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료를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과금할 것인지의 문제도 심각하다. 즉, 수익자 부담하는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자무역문서의 보관이나 증계, 증명에 따른 수익자를 명확히 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밝히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후 과금에 따르는 절차상의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다. 따라서 과금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수익자가 부담하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과금원칙의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3. 公正性和 客觀性的 確保問題

전자무역촉진법상의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복수가 아닌 단독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과 수익상황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없을 경우 전자무역문서보관소의 운영을 포함한 업무수행에 대하여 공정성이나 객관성의 문제를 제기할 소지를 안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제도에 대한 근본취지나 배경에 충실한 정책의 마련과 운영으로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즉,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무역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되, 사기업 차원의 투자와 이윤추구로는 실현될 수 없는 무역인프라⁴⁶⁾를 정부가 구축하여 그 운

44) 삼성SDS컨소시엄은 무역업무프로세스 혁신 BPR/ISP 사업의 추진결과보고서에서 전자무역기반시설이 본격 가동될 경우 연간 1조 8천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45) LG CNS, 전자무역서비스 구축 1차 사업결과보고서 - 전자무역세부추진계획수립 - 기반시설운영방안, 2005

46) 정부의 뒷받침없이 이러한 인프라가 자체적으로 생성된 국가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 국가주도로 무역을 지원하고 있는 중국-CIECC, 홍콩-TradeLink, 싱가포르-CrimsonLogic, 말레이시아-Dagang Net 등의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자무역

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먼저 지정 과정에 있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는 세부 절차와 제도가 마련되어 그에 따라 지정되어야 한다.

또한 운영에 있어서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준칙에 입각하여 운영되도록 관리·감독하되 당초 민간부문에서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지정한 취지인 효율성의 제고에 대하여도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V. 要約 및 結論

한국 경제에서 무역이 중요하다는 것은 새삼 언급할 필요조차 없지만 정작 무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의 정책을 실행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WTO체제하에서 국가가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지원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회적으로 무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은 시급하고도 절박한 한국무역의 과제이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에 주목하여 오래전부터 이른바 무역자동화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IT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자무역의 개념을 도입하여 이를 발전시킴으로써 무역부문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무역문서보관소는 정부의 이러한 정책과 민간부문의 협조를 바탕으로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여 구축한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일부이며, 전자무역문서의 중계 및 증명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기능요소이다.

한편, 국내 상거래에서도 빠르게 확산되는 전자문서의 활용에 따라 전자거래기본법에 규정을 두고 도입된 공인전자문서보관소제도는 일견 전자무역문서보관소와 유사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복수로 지정되며 모든 전자문서를 보관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전자무역문서보관소는 전자무역촉진법에 근거를 두며 단독으로 지정되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운영하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일부이고, 중계 및 증명을 위한 지원기능이 중심이다.

따라서 이용자층과 보관대상문서가 서로 같지 않으며 지정과 운영형태도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공인전자문서보관소와의 비교를 통하여 전자무역문서보관소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경우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전자무역문서보관소는 동일한 주체가 전자서명법상의 공인인증기관, 관세법상의 전자문서중계사업자,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등의 역할을 중첩적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에 따라 지위와 역할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전자무역문서보관소를 포함한 전자무역기반시설의 구축에는 막대한 정부예산이 소요되었고 전

기반사업자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www.paa.net)

자무역기반사업자는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정하게 되는데, 실제 운영에서는 적절한 운영 비용을 과금할 수 있을지가 문제시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전자무역문서보관소를 포함한 전자무역기반시설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배타적 운영권자로 지정되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의 확보가 문제시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준수는 물론 운영절차 등에 있어서 투명성의 확보가 실현되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공정성과 객관성의 유지를 위한 노력이 효율성을 저감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관계부처합동, e-Trade KOREA, Innovation 2002 - 전자무역촉진 종합이행계획(안), 2004. 7. 12
- 김상영, “전자공증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법 이론과 실무』, 제5집, 영남민사법학회, 2002. 12.
- 김선광, “전자문서 이용확산을 위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도입 필요성과 입법내용”, 『통상정보연구』, 제6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4. 4.
- 산업자원부 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3 전자상거래 활성화 워킹그룹보고서(I) 기업의 전자문서 활용을 위한 법률 정비 방안, 2004.2
- 삼성SDS 컨소시엄, 무역업무프로세스혁신 BPR/ISP 결과보고서, 2004
- 이창한, “전자문서이용촉진법 제정안과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 『전자거래기본법 개정 및 전자문서이용촉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3. 5.
- 이해완,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에 관한 입법방향”, 『전자거래기본법 개정 및 전자문서이용촉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산업자원부-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3. 5.
- _____,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에 관한 입법방향”, 2003 「전자상거래활성화 워킹그룹보고서(I)-기업의 전자문서 활용을 위한 법률정비 방안」, 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4. 2.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알기쉬운 전자문서 가이드
- 최석범, “동북아 e-Hub화를 위한 전자관리등록기관과 전자문서등록저장소의 운영방향”, 국제상학, 제18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2003. 4.
- LG CNS, 전자무역서비스 구축 1차 사업결과 보고서, 2005
- Ian Walden and Nigel Savage, “The Legal Problems of Paperless Transactions”, The Journal of Business Law, 1989 March
- 전자거래기본법
-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관세법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전자서명법

www.paa.net